

##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가 2025. 7. 12.부터 시행되어,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신청인이 지정하는 개인정보가 제3자(상대방 당사자 포함)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보호조치가 가능한 개인정보는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38조 제3항).

2. 보호조치가 필요한 문서와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특정하여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개인정보보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원고가 제출한 0000. 00. 00. 자 준비서면 00면 00행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 “00시 0000” 부분)

3.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과는 별개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예: 소장의 주소)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소송서류에 가급적 기재하지 않거나 해당 부분을 가린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유형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 방법

가. 소장 및 각종 사건 신청서(이하 “소장 등”이라 함)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 소장 등의 제출을 완료하여 부여된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즉시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개인정보보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소장부분 등이 그대로 송달되어 상대방에게 주소 등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 원고 기본정보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의 “☐제출문서에 보임” 체크를 해제하면 해당 개인정보는 소장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없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 주소는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274조 제1항 제1호) 위 기능은 주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소장 등 이외의 문서(예: 준비서면)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 소장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서 제출 후 즉시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개인정보보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문서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기재가 필수적인 “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 “개인정보 정정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본안 사건의 문건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개인정보보호)”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에는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소장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